

의안번호	2221492
의 퇴 인	김건 의원
회 답 일	2026. 10. 13.
추 계 번호	26G48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광물 재생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36 (핵심광물 재생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핵심광물 재생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기업) 20%, (그 외) 15% ※중소기업 졸업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31.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36 (핵심광물 재생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핵심광물재생시설¹⁾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됨

-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기업) 20%, (그 외) 15%
- ※ 중소기업 졸업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리튬광, 니켈광, 코발트광, 망간광, 흑연, 희토류광[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터븀), 세륨, 란타넘(란탄), 이트륨, 스칸듐에 한함], 니오비움광(니오븀), 동광(구리), 보크사이트(알루미늄에 한함), 규석·규사(규소에 한함), 마그네사이트(마그네슘에 한함), 몰리브덴광, 바나듐광, 백금광(백금, 팔라듐, 루테튬, 로듐, 이리듐에 한함), 주석광, 티탄철광(티타늄에 한함), 텅스텐광, 안티몬광(안티모니), 창연광(비스무스), 크롬철광(크롬에 한함), 연광, 아연광, 탄탈륨광, 지르코늄광, 갈륨, 인듐, 셀레늄, 스트론튬

- 해당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규정 사항
 - 적용기한: 2031.12.31.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핵심광물재생시설 관련 기업의 과세정보와 시설투자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공제 대상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